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71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5742	김선교의원	‘24. 11. 20.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상정, 축조심사
	2215249	최형두의원	‘25. 12. 15.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상정, 축조심사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

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행법의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

가함으로써, 산림 훼손과 산림 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 라.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 마.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 바.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 사.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 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를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로 한다.

제1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산나물·

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산물의 재배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방지·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에 따라”를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한다.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제39조제2항제1호 중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를 “준공
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
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7조제8항 및 제9항,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에 관한 적
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
지전용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

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 11. (생략)

<신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 15. (생략)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

-----.

1. -----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

2. ~ 15. (현행과 같음)

16. -----임산물
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

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u>정한다. 이하 같다</u> -----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② -----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u>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u>	1. ----- <u>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u>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 <u>임산물의 재배</u> -----

③ (생 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3. (생 략)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5. ~ 11.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임산물의 재배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5.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

	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 의 제거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방지·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신 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 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 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 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③·④ (생략)

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생략)

<신설>

-----5년-----

-----.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3-
· 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u>광업권자</u> 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채굴권자-----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허가</u>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 ----- -----허가 등과 제15조의2 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 8. (생략)

② ~ ⑥ (생략)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
2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
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 4. (생략)

⑧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
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
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⑨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
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
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
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⑧ -----제7항-----

-----.

1.·2.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제1호-----

-----.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 다.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

-----.

1. -----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